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. 12. 20 선고 2022가단246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

담당변호사 정병환

변 론 종 결 2023. 12. 6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0.

주 문

1. 망 F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망 D(주민등록번호 2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7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망 F과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9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7,426,7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7,426,797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F(2021. 3. 22. 사망)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, 2018. 9. 28.까지 합계 3,831,802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발생하였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. 10. 31. 현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리금 합계액은 7,759,847원이다.

나. 망 F은 2018. 9. 30. 배우자인인 망 D(2022. 9. 20. 사망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처분행위'라 한다)하고,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. 10. 12. 접수 제278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다. 망 F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라. 한편,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 및 G, H가 이를 공동상속하였고, 피고는 망 D이 사망하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2. 10. 21. 접수 제270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망 F에 대하여 7,759,847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, 채권자가

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, 위 금액이 피보전채권액이 된다. 그리고 망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망 F과 수익자인 망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망 D이 망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등기원인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,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

(1) 원상회복 방법

(가)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,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는데(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),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, 채무자 J, 채권최고액 5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[을구 7번, 9(1)번]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, 채권최고액 48,000,000원, 채무자 망 F의 근저당권(을구 12번) 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이 모두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. 11. 5.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
(나) 피고는, 원고가 이미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및 G, H를 상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,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채무자인 망 F, 수익자인 망 D의 상속인으로 그 지위를

포괄승계하였고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및 G, H를 상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(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가소130278)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.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,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(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),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), 수익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피보전채권 이행의무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의무이고,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가 지위의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원상회복 범위

앞서 본 바에 의하면,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.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, 갑 제3호증에서 확인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액 65,000,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,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58,000,000원을 공제액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, 결국 피고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 65,000,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58,000,000원을 공제한 7,000,000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7,759,847원 중 적은 금액인 7,000,000원을 한도로 한다.

다. 소결

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인 이 사건 처분행위는 7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1)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민영

별지목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충청북도 음성군 , , -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충청북도 음성군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면 적 : 46.32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) 충청북도 음성군 대 16504㎡2) 충청북도 음성군 대 2569㎡3) 충청북도 음성군 대 441㎡

대지권의 종류 : 1,2,3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19514 분의 30.4246

1) 피고는 망 F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수리심판(부산가정법원 2021느단1398)을 받았으나, 피고의 이 사건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망 D의 의무를 상속한 것이므로, 위 한정승인에 영향이 없고, 달리 피고가 망 D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.